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콘텐츠에서는 산업폐수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에 따른 규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규제 위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합니다.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1
1. 산업폐수의 배출 4
1.1. 산업폐수 및 배출방법 4
1.1.1. 폐수와 폐수배출시설 4
1.1.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6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9
2.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9
2.1.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9
2.1.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3
2.1.3.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16
2.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17
2.2.1. 설치 의무 17
2.2.2. 설치 면제 19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25
3.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25
3.1.1. 가동시작 신고 25
3.1.2. 운영 시 준수사항 27
3.1.3. 환경기술인 임명 30
3.2. 수질오염물질 측정 32
3.2.1. 측정기기 부착 32
3.2.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35
4.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 38
4.1. 개선명령 및 과징금 38
4.1.1. 개선명령 38
4.1.2. 과징금 40
4.2. 배출부과금 42
4.2.1.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감면 42
4.2.2.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45
4.2.3. 배출부과금의 조정 46

1. 산업폐수의 배출

1.1. 산업폐수 및 배출방법

1.1.1. 폐수와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수질오염물질 등

"폐수"란?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수질오염물질"이란?

▪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등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등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구 분	내 용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 이상)인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 이상)인 시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함)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란?

•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

√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및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공공수역 등으로 폐수를 배출시키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봅니다.

1.1.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1조 및 제32조제1항).

▪ 배출허용기준은 "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총유기탄소량·부유물질량과 ②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로 "지역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13 참조).

※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함)[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제외함]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본문).

▪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등

엄격 배출허용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특별배출허용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별도 배출허용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 ※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위반 시 제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등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어도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0조).

▪ 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명령의 이행보고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2.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2.1.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허가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허가 기준

▪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설치허가 기준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수수료 납부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제4항제1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발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 발급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설치신고 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밖에 있는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수수료 납부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제4항제1호).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4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 발급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설치제한 지역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4.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설치제한의 예외

▪ 다음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구리 및 그 화합물
- 디클로로메탄
- 1, 1-디클로로에틸렌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및 제2호).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제7호 및 제8호).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1.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변경허가 대상

▪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공동방지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변경허가 기준

▪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변경허가 기준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제출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수수료 납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제4항제1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전(事前) 변경신고 대상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사전(事前) 변경신고 대상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아래 사후 변경신고의 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다음에 모두 해당(「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하여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사후(事後) 변경신고 대상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변경신고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항).

사후(事後)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3. 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6. 사전(事前) 신고 사항 1.부터 4.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7.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변경신고 기한

▪ 변경신고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 위의 사전(事前) 변경신고 사항의 경우: 변경 전
-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위의 사후(事後) 변경신고 사항 2.부터 6.까지의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위의 사후(事後) 변경신고 사항 7.의 경우: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4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가 발급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위반 시 제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제2호).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5호).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1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형사처벌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2.1.3.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권리와 의무의 승계

승계의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사업자가 그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물환경보전법」 제38조)
-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금지행위, 이에 따른 운영·관리 기준 및 조치명령 등(「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물환경보전법」 제39조)
-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받는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40조)
- 배출부과금 부과처분(「물환경보전법」 제41조)
-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 과징금 부과(「물환경보전법」 제43조)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물환경보전법」 제46조)
- 환경기술인 임명(「물환경보전법」 제47조)
- 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제1호)

2.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2.2.1. 설치 의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 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공동방지시설 설치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 위의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본문).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함)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다만,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함)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함)를 한 사업자에게는 위의 서류 중 2.와 3.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공동방지시설의 변경

▪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2.2.2. 설치 면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설치 면제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유

1.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2-㉮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위탁처리할 수 있음)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3-㉮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등에 위탁처리해야 함]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6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면제사유	제출서류
1.	•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3-㉯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3-㉰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라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면제사유	준수사항
1.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 폐수위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됩니다.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해야 합니다. ※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해야 하며, 18L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 세로 4㎝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합니다. ※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합니다.

3.	•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고 함)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 또는 3-㉰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2) 3-㉯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3-㉯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3-㉯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③㉰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설치허가·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폐수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8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설치 면제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

형사처벌

-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3.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3.1.1. 가동시작 신고

가동시작 신고 및 면제

가동시작 신고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를 한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 조사를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가동일 변경신고

▪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단서).

- 폐수처리업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시운전 및 방지시설 운영

▪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구분	시운전 기간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 ※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시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후단).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오염도 검사

▪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함)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오염도 검사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 폐수처리업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대상 폐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오염도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개선명령 및 과징금-개선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운영 시 준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운영 시 금지행위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희석처리의 인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 희석배율 및 희석량

▪ 시·도지사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 • 위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하거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및 제7호).

운영일지 기록·보존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의무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시설 구분에 따른 운영일지 서식

▪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사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시설의 구분	운영일지 서식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폐수배출시설(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3.1.3.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임명시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 17).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 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릅니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라.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환경기술인의 의무

▪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가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 등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3항).

▪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명령이행의 보고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2호).

3.2. 수질오염물질 측정

3.2.1. 측정기기 부착

수질오염물질 측정

자가측정 및 측정대행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가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 부착 의무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 ※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측정기기 부착기한

▪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대상 사업장	부착기한	비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
위의 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가동시작 신고 전	
	2.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폐수배출량 증가로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의 운영

측정기기 관리 대행

▪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이라 함)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본문).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단서).

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행위

▪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함)를 부착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조치명령 등

▪ 위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위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

위반 시 제재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1호·제12호 및 제13호 및 제38조의3).

-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

▹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제외함)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

▹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호의2 및 제10호).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 조치명령(「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9조제1호 및 제80조제1호).

3.2.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배출량조사 및 결과 제출

배출량조사 대상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함)를 받은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조사 계획의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배출량조사 방법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게시한 조사계획 및 다음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및 별표 14의4).

구 분	내 용	
조사 항목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조사 횟수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분기 1회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장	반기 1회
	제3종 사업장	반기 1회

배출량조사 관련 자료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2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도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4.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

4.1. 개선명령 및 과징금

4.1.1. 개선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개선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개선기간의 연장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개선

개선계획서 제출

▪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등”이라 함)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① 보고 및 검사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①-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①-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업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② 위의 ①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위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위의 사유의 구분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구분	제출시기
①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②-가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②-나 및 ②-다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이내

▪ 위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②-나 및 ②-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관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개선사유서 제출

▪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 위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개선사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

▪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항).

개선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개선완료 보고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조업정지명령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했으나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조업정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3호·제14호).

명령의 이행보고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

4.1.2. 과징금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부과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발전소의 발전설비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 제조업의 배출시설
-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배출시설

-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
- 석유비축계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4의2).

과장금 산정 방법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1.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위 가. 또는 나.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은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6항).

과징금 납부기한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4.2. 배출부과금

4.2.1.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감면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 배출부과금 부과 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여부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가산금 부과

▪ 배출부과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징수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 또한 이 가산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8항).

배출부과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기본배출부과금 계산식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배출부과금

▪ 초과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1.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함)

▪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공동방지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초과배출부과금 계산식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추가 금액	
추가 금액	① 위 1.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 ② 위 2.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500만원
예외	위 1.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위 ①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추가금액을 더하지 않음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 등(「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및 감면

배출부과금 면제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는 배출부과금이 면제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배출부과금 감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다음의 범위에서 기본배출부과금이 감면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후단).

감면 대상	감면 범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경	
√ 6개월 이상 1년 내	20% 감경
√ 1년 이상 2년 내	30% 감경
√ 2년 이상 3년 내	40% 감경
√ 3년 이상	50% 감경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재이용률이 10% 이상 30% 미만	20% 감경
√ 재이용률이 30% 이상 60% 미만	50% 감경
√ 재이용률이 60% 이상 90% 미만	80% 감경
√ 재이용률이 90% 이상	90% 감경

증명자료 제출 및 제출기한

▪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다만,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및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 ※ 배출부과금의 자세한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47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납부통지의 기간

▪ 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 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납부통지는 납부통지서 외에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가 함께 발송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납부기간

▪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사유

▪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 1. 또는 2.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배출부과금의 금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함)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서류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후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되어 2년 이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그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징수유예 취소 및 체납금액 징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2.3.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1.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함)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않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조정기준

▪ 위 1.의 조정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기준</th></tr>
<tr><td rowspan="2">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td><td>①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td><td>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함)</td></tr>
<tr><td>② 위 ① 외의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에 개선,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수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td><td>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함)</td></tr>
<tr><td colspan="2">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td><td>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함)</td></tr>
<tr><td colspan="2">그 밖의 경우</td><td>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허가취소일</td></tr>
</table>

※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위탁처리(「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했으나 위탁처리대상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②의 경우와 같이 적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 위 2.의 조정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 위 3.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조정부과 및 환급 통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위 1.의 조정사유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조정신청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조정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기한

▪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결과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